



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

2022. 7.



지원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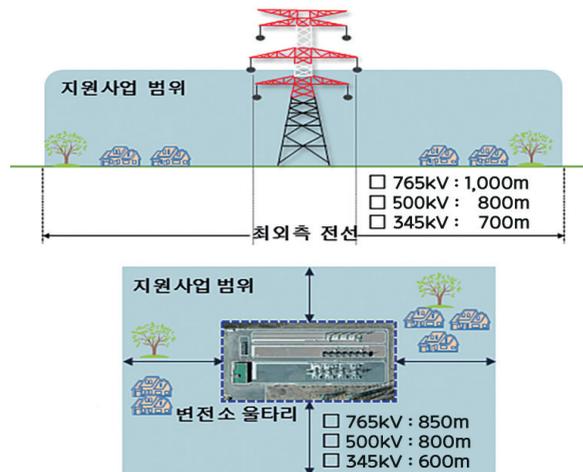
사업의 목적

- 345kV이상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지원대상

-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주민등록 전입된 실거주 세대
-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

구 분	765kV	500kV	345kV	비고
송전선로	1,000m이내	800m이내	700m이내	최외측선으로부터 (양측)
육외변전소	850m이내	800m이내	600m이내	외곽경계로부터 (사방)



지원사업 신청기한

- 2023년도 지원사업 신청 완료일
 - ◆ 주민지원사업 : 2022년 9월 12일
 - ◆ 공동지원사업 : 2022년 9월 30일
 - ◆ 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: 2022년 9월 30일

※ 2022년 9월 12일 이후 「세대별 주민지원사업신청서」를 제출한 세대는 2024년 지원대상에 반영

사업의 종류 및 지원사업비 산정

주민지원사업(지원사업비의 50% 이내)

사업의 구분	주민지원사업
사업시행자	한전
지원대상자	주민의견 수렴기간 내 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
시행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대별 지원금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전기요금 우선 지원 • 전기요금 지원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주민 신청·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촌사랑 상품권, 전통시장 상품권 - 상수도,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• 잔액 지급 미신청 시 차년도 지원금으로 이월

공동지원사업(지원사업비의 50% 이내)

사업의 구분	주민복지사업, 소득증대사업, 육영사업, 그 밖의 사업
사업시행자	주민(공동)대표 5인 이상 ~ 10인 이하 (단, 50인 이하의 경우 조정가능. 최소 2인)
시행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대표와 한전 대행계약 협약서 체결 • 지원금은 착수금, 중도금, 준공불로 구분하여 분기 별로 신청·지급 •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재원의 출처를 밝히고 주민 공동명의로 취득·관리 • 지원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

마을별 지원사업비 산정방식

- 연간 지원사업비
전년도 6.30일 송·변전 설비량×설비별 지원단가
- 마을별 지원금은 연간 지원사업비를 전국 송주법 대상 마을의 지원계수의 합에 해당 마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출
- 마을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는 세대수, 설비계수, 전압계수, 지리적 특성계수, 송변전설비 특성계수를 반영하여 산출
 - ※ 마을별 지원계수는 해당 마을을 경과하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, 전압, 농어촌 및 도시지역 등에 따라 달라짐
- 마을 세대수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확정된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

지원사업 시행절차

단 계	주요 업무	시 기
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(정부 → 한전)	•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 -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- 지원금의 산정 및 사업규모 등	6월
↓		
차년도 지원사업 규모산정 (정부 → 한전)	• 사업자별 차년도 연간사업비 산정 - 당해연도 6.30일 송변전설비량 기준	7월
↓		
지원사업계획안 작성 (한전)	• 지원사업 시행기간, 종류별 투자계획, •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등 포함	8월
↓		
주민의견 수렴 (한전)	•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•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	8~9월
↓		
지원사업계획 제출 (한전 → 심의위원회)	• 지원사업 계획 수립 •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요청	10월말
↓		
지원사업계획 심의 (심의위원회)	• 지원사업 계획 등 심의	11월
↓		
지원사업계획 제출 (한전 → 정부)	• 지원사업 계획	12월
↓		
지원사업계획 승인·통보 (정부 → 한전)	• 차년도 지원사업 계획 승인	12월
↓		
지원사업 시행 (한전)	• 주민지원사업 : 시행자 • 공동지원사업 : 시행자 또는 대행자	차년도
↓		
지원금 지급 (한전 → 주민)	• 매월 또는 분기별	차년도 매분기
↓		
시행결과 및 결산보고 (한전 → 정부)	• 대행자 제출자료 및 결산보고서 제출 •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 확정	차차년도 1~2월

공동지원사업 시행

주민대표 선출 및 권한

- 주민대표는 주변지역 주민(*)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
- (*) 주변지역 주민 :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세대
- **주민대표 임기는 3년**을 원칙으로 하며,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 시 연임 가능
- 주민대표는 한전과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, 신청, 대행 등 기초행정지역의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주변지역 주민 요구사항 사업진행 사항 및 관련서류 공개
- 주민대표는 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적절한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

공동지원사업 지원금 신청·지급 및 사용

- 주민대표는 한전에 착수금 및 분기별 지원자금 신청
- 한전은 주민대표에 착수금 및 사업의 진척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
-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장기 지원사업을 수립한 경우 지원금은 지원사업 시행연도에 지급
- 주민대표의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,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**지원사업 전용카드 우선 사용원칙**

공동지원사업의 중단

- 지원대상 송·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된 경우
- 한전은 지원사업의 대행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사업 대행을 중단할 수 있음
 -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
 -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
 - **주민 간 갈등으로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**
 - **주민대표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**

협조요청 및 기타사항

지원사업 비율변경 안내

- 주민지원사업 비율은 50% 이내 시행 원칙이나, 지원대상 세대 전원 합의 시 50% 초과 시행 가능
- 공동지원사업 비율을 50% 초과 시행 시, 그 비율에 따라 공동지원사업 장려금 지급(사업비의 20% 이내)
- **공동지원사업 비율이 20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결정된 마을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 예정이오니 기한 엄수 요망**

협조요청 사항

- 거주사실에 변동이 있을 경우,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변경 신청 진행
- 주민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기초행정 지역은 조속한 시일내 주민대표 선출하여 공동사업 진행
- 주민대표는 공동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 사용을 할 수 없으며, 한전은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을 확인한 경우 용도외 사용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연도 지원금에서 해당금액을 감하여 지급
- 송주법 지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으로 부정청구 등 발생 시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명단공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- 본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전의 내부규정에 따라 시행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지원사업포털 (<http://tas.kepco.co.kr/>) "송주법 일반" 참조



주 소 :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
한전 광주전남본부 송전운영부

연락처 : 062) 260 - 5772 ~ 6